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October 15, 2024

Table of Contents

Tax News

- 정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 국세청, 건설업·의약품·보험증개 3개 분야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4.9조 원, 전년 대비 65.2% 감소
-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 232.2조 원, 전년 대비 9.4조 원 감소
- 관세청,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도입

최신 주요 개정 동향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3호, 2024. 9. 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4호, 2024. 9. 10.)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제1081호, 2024. 9. 10.)

최신 예규·판례

-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 공익법인의 증여세 제외 사후관리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해당 여부
-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Tax News

정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발표

정부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투자 회복·가속화·건설부문 적극 보강·민간소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공개하였는 바, 이번 추진과제 중 세제지원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 추진과제
투자회복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및 투자증가분의 공제율 상향 항구화
건설부문 적극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건설용 토지 출자·취득 관련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검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연장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사업자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후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보유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분양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5년 … 7년) 한시 확대 (2025년~2026년) 미분양아파트(85m²·3억 원 이하)*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월~2025년 12월 준공된 2025년 12월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비자의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분양주택(85m²·6억 원 이하)*의 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1주택 특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8월 2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85m²·6억 원 이하) 대상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지방 미분양(2024년 3월 28일~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매입 시 취득세 중과배제(세율 12% … 1~3%) 및 취득 후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민간 소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40% … 80%)·추가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10% … 20%) 온누리상품권 구매 기업 업무추진비 순금산입 특례 적용(2024년 이후 지출분) 배추·무·당근*¹ 및 수입과일 전 품목*²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¹ (배추·무) 10월 말 … 연말 (당근) 9월 말 … 연말 (잠정 10월 말부터 재개) *² 바나나·파인애플·야보카도·망고·망고스틴·자몽·체리·키위·두리안·만다린 등 10종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책·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장사다리 구축방안·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2024년 12월 → 2026년 12.)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제외기간 2년 연장 (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 2027년 12월)
조특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출업 유예기간 확대 (3년 →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 사전 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 추징 제외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환급대상·환급절차·제출서류 등)
부가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최대 10만 원)
종부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에 의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의 종부세 중과 주택 수 제외기간 2년 연장 (2025년 12월 → 2027년 12월) • 종부세 합산배제 LH 매입계약 공공매입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6억 이하 → 9억 이하)

정부,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재의 입국·취업·정주까지의 유입 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며, 이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에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국세청, 건설업·의약품·보험중개 3개 분야 리베이트 관련 세무조사

국세청은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17개)·의약품(16개)·보험중개(14개) 등 3개 분야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며, 국세청은 리베이트 비용을 지급한 업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시행사·의료인·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소득세 등을 과세할 방침임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급여 지급) 발주처의 특수관계인에게 가공급여 형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 (비용 대신 부담)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 (허위용역비 지급)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 (페이백 수취) 하도급업체에 과다한 도급액 지급 후 페이백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취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대납) 의료인의 결혼식·신혼여행·호텔 비용 등 대납 • (물품 제공) 의료인 및 병·의원에 가전제품·가구 등 제공 • (현금 지급)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 제공 • (CSO 활용) CSO에 고액수수료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리베이트 변칙 지급
CEO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배우자) 가입법인 사주 본인·배우자를 설계사로 허위등록 후 모집수당 지급 • (자녀)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를 설계사로 허위등록 후 모집수당 지급 • (기타) 가입법인 사주의 형제자매 등을 설계사로 허위등록 후 모집수당 지급

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4.9조 원, 전년 대비 65.2% 감소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4,957명·신고금액은 64.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462명(8.5%)·121.5조 원(65.2%) 감소하였는 바,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각각 389명(27.2%)·120.4조 원(92%)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올해 8월 누계 국세수입 232.2조 원, 전년 대비 9.4조 원 감소

올해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6.8조 원 감소하고,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1조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0.1조 원 소폭 감소하였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율 인하로 인해 0.7조 원 감소하였음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도입

관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바,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란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해 조사팀이 3회를 초과하여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 건 제외), 납세자보호관이 사전 검토·승인하는 제도로서 관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스마트혁신 과제 중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협력 검증을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신설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제도임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3호, 2024. 9. 1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주식·수익증권, 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74호, 2024. 9. 1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80호·제1081호, 2024. 9. 1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신 예규·판례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 쟁점사항

-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지법 §7 ⑤),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지령 §11 ②),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해 유상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주식발행법인의 기타 주주들의 유상감자로 인해 기존주주가 지분 취득 없이 지분율이 상승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주의 지분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부동산세제과-2606, 2024. 7. 30.), 이는 주식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거나 또는 무상감자함에 따라 기존 주주가 주식 등을 취득하지 않고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권 해석 및 대법원 판결(부동산세제과-2867, 2023. 8. 1, 대법2010두8669, 2010. 9. 30.)과 동일하게 지분율 증가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기존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의 해석으로 판단됨

■ 시사점

- 한편, 조세심판원은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지분율이 100%가 된 과점 주주가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지분율이 여전히 100%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조심2022지0780, 2023. 8. 31.), 결국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이라는 주식 취득 요건과 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라는 지분율 증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번 유권해석처럼 주식 취득 없이 지분율만 증가하거나 또는 주식 취득이 있으나 지분율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유권해석과 심판례의 입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의 증여세 제외 사후관리 적용 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해당 여부

■ 관련 규정

- 구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구 상증법 §48 ② 4호, 2007. 12. 31. 개정 전, 이하 '쟁점규정')

■ 쟁점사항

-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증여가 아닌 매매 또는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규정에서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한지 여부임

■ 판결요지

-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쟁점규정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키므로,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출연받은 재산'은 매각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증여가 아닌 매매·신축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쟁점규정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함(대법2021두54293, 2024. 9. 13.)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쟁점규정의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 뿐만 아니라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당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기준 유권해석과 달리(상증법 집행기준 48-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5, 2006. 8. 10. 외),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공익법인 등이 증여 받은 당해 재산만으로 한정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이번 판결은 공익법인 등이 최초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당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자금출처로 하여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제외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 쟁점사항

- 현행 조특법은 고용이 증가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 증가인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조특법 §29의 7), 동일한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중 내국인 지분을 상당액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외국인지분을 상당액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127 ③, 이하 '쟁점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고용 증가인원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연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차연도에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연도 추가공제가 쟁점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동일한 과세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연도 추가공제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중복지원 배제대상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1차연도 최초공제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전 과거 사업연도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2차연도·3차연도 추가공제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동시 적용도 중복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함을 시사하고 있음(기준 -2024-법규법인-0083, 2024. 8. 8.)

■ 시사점

- 조특법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 7)와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조특법 §127 ⑪), 기준 유권해석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연도 추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연도 최초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반면(서면-2023-법인-1263, 2023. 6. 8.), 이번 유권해석은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적용 전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연도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차연도에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2차연도 추가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2차연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2차연도 추가공제액 중 내국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금액에 포함하고, 외국인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 한 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 재 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 태 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공 성 덕 Managing Director

seongdeok.kong@pwc.com
02-709-7056

조 영 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 민 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ption](#).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